

##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1-13호

###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의회



####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미경 의원 김영애 의원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조미경 의원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경 의원 황재만 의원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	
아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안	맹의석 의원 심상복 의원	
아산시 특별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수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목)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3) 서면, 우편, 전자우편(pys9799@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